

제 279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6.11.)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 과]	1
2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6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10
4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15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5.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5. 31.

2.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중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확보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7.~3. 2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의 경비 지원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름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도내에 경상남도 등 1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 활동 지원, 제4조에 이중지원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현재 같은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17개소이며, 하동군과 거창군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는 재난구호에 앞장서고, 읍면 단위 봉사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을 찾아 지역사회 복지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로서, 협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5.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5. 31.

2. 제안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할인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권면금액 확대함(안 제3조)
 - 1) 신설: 5만원, 10만원
- 나.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함(안 제6조·제7조)
- 다. 할인범위 확대, 추가할인 근거 마련함(안 제9조)
 - 1) 할인범위: 100분의 6 ⇒ 100분의 10
 - 2) 추가할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제15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4. 30.~5.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지역화폐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5조제2항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10% 할인 금액 중 5%는 국비,
나머지 5%는 지방비(도비+군비)로 충당하고 있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거창군을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서 할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거창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할인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 안 제3조의 권면금액에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신설하고, 할인범위를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현재 거창을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서 할인범위를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과 맞지 않는 업종을 제한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이도록 해 재정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관련법령 발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0.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5. 31.

2. 제안이유

- 거창군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 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정비함(안 제2조·제7조의3·제10조)

1) 국가보훈대상자 정의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설

2) 명예수당 관련 용어 등 정비

가)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나)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이름 변경: 참전명예수당 ⇒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3)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4) 인용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

나. 생업지원 신설(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4. 24. ~ 5.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필요

-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매점의 운영권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해주는 내용으로써 별도의 재정 투입은 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도내에 경상남도 등 12개 지자체에서 복지지원이나 생업지원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단서를 추가 하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 등의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의 제9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실질적 생활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 [법률 제1952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도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5.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5. 31.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①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신원면 대현마을은 4개 자연마을(상대,중신기,중대,하대) 36가구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기존마을회관 노후(35년이상 경과) 및 시설규모 협소(현 규모, 84㎡),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주민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 도로부지내 위치한 불법건축물로 양성화 또한 불가하며, 연접산지 토사유출, 축대 붕괴 위험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계획된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마을진입부 연접 농지를 매입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신축(기존마을회관→철거)하고자함
- ※ 신원면 (기존)대현마을 회관

위 치	건축면적	건축년도	주요 참고사항
대현리 935-2(도로)	84㎡	불명 (35년 이상 경과)	개인도로부지 내 건물 위치 → 건축물대장 없음, 건물양성화 불가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3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8. ~ 2024. 12.
- 사업비 : **995백만원**(군(전환) 70%, 군 30%) - 마을 자부담 5백만원 별도
- 사업내용 : 마을안길 정비 및 생활환경개선 1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통인프라 및 안길정비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포함)	마을회관 철거 및 정비	부대 경비	비고
사업비	995	390	500	25	80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면적(㎡)				
취득	토지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34	1,613	5,807	2024	커뮤니티센터 신축	

※ 1)기준가격 적용 : 토지 → 현.기준 공시지가

- 취득 토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 : 첨부 2 참조

다. 추진경과

- 2022. 7. : 공모사업 선정
- 2022. 10. ~ 2023. 12. : 기본계획(안) 수립 및 주민협의
- 당초 공모사업 선정 사업계획(안)에 사업 실효성 논란,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기본 계획 수립 지연
- 2024. 1. ~ 8. : 마을안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2024. 3. ~ 5. :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라. 향후계획

- 2024. 6. : 커뮤니티센터 신축예정지 보상협의
- 2024. 7. ~ 2025. 2. : 마을회관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으로 인한 주민이용성 확보
- 기초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여건 조성
- 농촌환경개선과 주민편익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책자 참조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신축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개인도로부지 내 건물이 위치해 있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등 양성화가 불가하며, 건축한 지 35년 이상 지난 건물로 상당히 노후화되었음

- 또한, 연접산지 토사유출, 축대 붕괴 위험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보수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보여짐.
-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경로당 역할을 넘어 다목적 복지생활 시설로 활용하고 노령화와 정서적으로 단절돼 가는 주민들이 가족처럼 서로 돌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2]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1. 제안이유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이를 매입하여 건립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 위치 :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6. / 5년
- 사업량 : 부지규모 30,000㎡정도, 건물면적 3,000㎡(1동 / 지상 2층)
 -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조경시설 등
- 사업비 : 19,800백만원(국 4,155.9, 도 890.55, 군 14,753.55)
 - ※ 부지매입비, 기반공사 및 주민지원(인센티브) 별도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45필지, 335,031㎡ / 첨부1 참조

다. 추진경과

- 2022. 9.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종합 기본계획 수립
- 2022. 12.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 1. : 화장시설 건립 전담 부서 신설(전략담당관)
- 2023. 2.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구성
- 2023. 2.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1개소 신청)
- 2023. 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3. 6.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심의(부적합 결정)
- 2023. 7. ~ : 선진화장시설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등
- 2023. 10. ~ : 후보지 사전검토 요청지 현장 방문 등
- 2024. 2.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
- 2024. 4.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접수(9개소 신청)
- 2024. 5.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심의(1개소 선정)

라. 향후계획

- 2024. 6. : 국도비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착수
- 2024. 7. :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 2024. 9.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4. 10. :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정
- 2024. 12. : 건립 부지매입 완료
- 2025. 6. : 설계 완료 및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25. 7. : 공사 착공
- 2026. 6. : 공사 완료

마. 기대효과

-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
- 친환경적인 화장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장례비용 절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용 편의 제고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책자 참조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남하면 대야리 1228-46일원 45필지 335,03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2024년 2월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제공모를 통해 총 9개소에서 신청서를 제출, 마을주민 77명 중 76명의 압도적인 찬성을 끌어낸 현 부지를 지난 5월 13일 선정·발표하였음.
- 현재 전국 평균 화장률이 91.8%, 국민 10명 중 9명이 장례 방식으로 화장을 선택하고 있음.
- 거창군은 물론 인근 함양, 합천, 산청군 등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의 31% 이상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화장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에서 화장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문화 휴식 산책 등 다목적 생활공간,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 화장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여 다양화·고급화하는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